

신기술(특허공법) 사용협약서

※ 신기술(특허공법) 개요

- 신기술(특허공법) 명: 섬유강화 준불연 패널과 이를 이용한 구조물의 기능향상 및 보수보강 공법

(QN-FRP패널공법: Quasi-noncombustible Fiber Reinforced Panel)

- 신기술(특허공법) 번호: 특허 제 10-1679065호
- 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: 에프알이피동국산업(주)

※ 발주자 및 적용공사

- 발주자: 울산항만공사
- 신기술(특허공법) 적용 공사명: 2021년 울산항 항만시설물 보수·보강공사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2021년 울산항 항만시설물 보수·보강공사」에 대하여 발주자는 발주자로서 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는 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(특허공법)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범위) ① 위 공사 중 신기술(특허공법)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(설계내역서 포함)에 의한다.

-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(특허공법)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기술사용료 등)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(특허공법)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는 신기술(특허공법)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비율(8.5%)을 공사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.

- ※ 협약체결 후 상기 공사의 설계금액 변경 시 기술사용료 비율은 관련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.

- ② 상기 공사 낙찰자 결정 후 기술사용료는 낙찰률이 80%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률을 80%로 적용하고, 낙찰률이 80% 이상인 경우 해당 낙찰률을 적용하여 조정한다.
- ③ 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④ 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"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(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355호, 2019.7.1.)"에 따라 처리한다.

제4조(하도급 등) ①제3조에 따른 신기술(특허공법)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(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)하지 아니하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 대금은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(낙찰률이 80% 미만인 경우에는 80%)을 적용한 금액과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4조에 따른 적정 하도급율(82% 이상)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한다.

③ 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가 상기 공사에 하도급 등의 방법으로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설계변경 등)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(특허공법)과 관련하여 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, 공사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.

2021년 02월 일

발주자(특허공법 협약자)

주 소: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

법인등록번호: 230171-0003849

대표자: 울산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(인)

신기술(특허공법) 보유자

주소: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길 163

법인등록번호: 200111-0255070

대표자: 에프알이피동국산업(주) 대표이사 박문숙, 선동수